

---

#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2022. 12.

# 1. 인권영향평가 개요

## 가. 배경

-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확정에 따라 인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평가 신설 요청
- 연구원은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제정을 통한 인권영향평가 시행 제도화

## 나. 목적

- 기관경영 및 주요사업 활동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분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함에 따라 인권 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인권영향평가를 위탁함으로써 원내 인권영향평가의 객관성 향상 및 체계성 개선

# 2. 추진방법

## 가. 인권영향평가 위탁용역 추진

- 위탁용역을 통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진행
- 인권영향평가 경험을 가진 위탁용역 업체를 통해 체계적인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나. 과업 수행인력

- 이매너지먼트(주) 3인 : 대내외 인권경영 환경 분석,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검토,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관련 자문 및 지원

## 다. 추진일정

- 인권영향평가 개선 계획(안) 수립 : 2022. 07. 20.(수)
- 위탁용역 계약체결 : 2022. 10. 18.(화)
- 위탁용역 착수보고 : 2022. 11. 02.(수)
- 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2. 11. 03.(목) ~ 2022. 11. 11.(금)
- 인권영향평가 결과 검토 : 2022. 11. 15.(화) ~ 2022. 11. 21.(월)
- 결과보고서 작성 : 2022. 11. 22.(화) ~ 2022. 11. 25.(금)
- 위탁용역 최종보고 : 2022. 11. 28.(월)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2022. 12. 08.(목) ~ 2022. 12. 15.(목)

## 라. 평가방법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인권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10분야, 33항목, 156지표) 중 연구원과 무관한 항목을 제외하고 ” 직원 인권 보호 “ 분야를 추가하여 11개 분야 30개 항목 138개 지표로 평가 실시 및 최종보고회 보고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연구원의 특정사업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최종보고회 보고

## 3. 인권영향평가 결과(요약)

### 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인권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10분야, 33항목, 156지표) 중 연구원과 무관한 항목을 제외하고 ” 직원 인권 보호 “ 분야를 추가하여 11개 분야 30개 항목 138개 지표로 평가 실시 및 최종보고회 보고

○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 No. | 분 야              | 예    |      |    | 보완필요 |      |    | 해당없음 |      |    | 비고            |
|-----|------------------|------|------|----|------|------|----|------|------|----|---------------|
|     |                  | 2021 | 2022 | 증감 | 2021 | 2022 | 증감 | 2021 | 2022 | 증감 |               |
|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28   | 29   | 1  | 1    | -    | △1 | -    | -    | -  |               |
| 2   | 고용상의 비차별         | 14   | 14   | -  | -    | -    | -  | -    | -    | -  |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14   | 14   | -  | -    | -    | -  | -    | -    | -  |               |
| 4   | 강제 노동의 금지        | 8    | 8    | -  | -    | -    | -  | -    | -    | -  |               |
| 5   | 아동노동의 금지         | 5    | 5    | -  | -    | -    | -  | 1    | 1    | -  |               |
| 6   | 산업안전 보장          | 15   | 15   | -  | -    | -    | -  | -    | -    | -  |               |
| 7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5    | 4    | △1 | 3    | 3    | -  | 2    | 3    | 1  |               |
| 8   |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 3    | 3    | -  | -    | -    | -  | 2    | 2    | -  |               |
| 9   | 환경권 보장           | 2    | 7    | 5  | 2    | -    | △2 | 4    | 1    | △3 |               |
| 10  | 고객 인권 보호         | 11   | 12   | 1  | -    | -    | -  | 1    | -    | △1 |               |
| 11  | 직원 인권 보호         | 14   | 16   | 2  | 1    | -    | △1 | -    | 1    | 1  | 신규지표<br>2개 추가 |
| 합 계 |                  | 119  | 127  | 8  | 7    | 3    | △4 | 10   | 8    | △2 |               |

○ 2021년 대비 2022년 주요 변동 내역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 1개 지표 “보완필요” 에서 “예” 로 변경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 1개 지표 “예” 에서 “해당없음” 으로 변경
- “환경권 보장” 분야 2개 지표 “보완필요” 에서 “예” 로 변경, 3개지표 “해당없음” 에서 “예” 로 변경
- “고객 인권 보호” 분야 1개 지표 “해당없음” 에서 “예” 로 변경
- “직원 인권 보호” 신규지표 2개 추가하여 평가 실시하여 “예” 로 평가

##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연구원의 특정사업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최종보고회 보고
-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 No.        | 항 목          | 예         |           |          | 보완필요     |          |           | 해당없음     |          |          | 비고 |
|------------|--------------|-----------|-----------|----------|----------|----------|-----------|----------|----------|----------|----|
|            |              | 2021      | 2022      | 증감       | 2021     | 2022     | 증감        | 2021     | 2022     | 증감       |    |
| 1          | 사업의 인권체제     | 2         | 3         | 1        | 1        | -        | △1        | -        | -        | -        |    |
| 2          |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4         | 5         | 1        | 2        | 1        | △1        | -        | -        | -        |    |
| 3          | 수행기관 관리      | 2         | 2         | -        | -        | -        | -         | -        | -        | -        |    |
| 4          | 사후관리         | 2         | 2         | -        | -        | -        | -         | -        | -        | -        |    |
| <b>합 계</b> |              | <b>10</b> | <b>12</b> | <b>2</b> | <b>3</b> | <b>1</b> | <b>△2</b> | <b>-</b> | <b>-</b> | <b>-</b> |    |

# [별첨]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상세내역

## I 인권영향평가 개요

### 1. 인권영향평가 이해

#### 가. 개념 이해

| 구분                 | 개념  |
|--------------------|---|
| 인권경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amp; Human Rights</li> <li>• 국제사회에서 선언한 국제인권규범을 지지하고 국내 법률을 준수해, 인권침해 회피 노력을 다하고 부정적 인권영향 발생 시 이를 다루는 회사의 경영 활동</li> </ul>                                       |
| 인권경영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ystem for Implementing the Business &amp; Human Rights</li> <li>• 인권경영 이행 체계로 정책선언, 이행 시스템 구축과 실행, 실행성과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을 포함</li> </ul>                                     |
| 인권실사 및<br>실천·점검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ue Diligence</li> <li>• 회사의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 인권영향 파악, 예방 및 완화 조치 시행, 실행 성과 추적 및 공개 과정을 의미함</li> <li>•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실행 성과를 회사의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이행 증거로 판단</li> </ul> |
| 인권영향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li> <li>•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이행의 핵심 도구로 부정적 인권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li> <li>•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원칙과 절차 수행이 요구됨</li> </ul> |

## 나. 특징 및 주요 요소

| 구분    | 개념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등과 구별</li> <li>• 회사 인권 리스크는 물론 권리보유자(HR holders)의 리스크를 동시에 다룸</li> <li>•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범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li> <li>• 보편적이면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li> </ul>  |
| 주요 요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절차와 결과의 정당성, 신뢰성 확보(이해관계자 참여)</li> <li>• 평등과 비차별 원칙</li> <li>• 접근성과 투명성</li> <li>• 책무성(피해자 구제절차와 연계)</li> <li>• 포괄성(모든 인권을 고려)</li> <li>• 정책 피드백의 효율성(회사의 참여)</li> <li>• 객관성, 전문성, 독립성(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참여)</li> </ul> |

## 2. 인권영향평가의 중요성

### 가. 회사 인권리스크 사전관리 & 실제적·잠재적·부정적인 인권영향 파악

- 회사 운영 및 주요사업 관련 인권취약 분야 파악
- 인권침해 예방 및 완화계획 수립의 기초 정보 제공
- 인권취약 지역 또는 이해관계자 인권증진 프로젝트 개발 기회 제공

### 나. 부정적 인권영향 발생 예방

-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조직 구성원 인식 제고
- 이해관계자 인격권 및 노동권 침해 예방
- 여성,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 요소를 파악하여 사전 대책 마련
- 기타 회사 운영과 사업 관행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 다. 리스크 및 압력 대응

- 회사 명성, 재정 리스크, 법적 리스크, 지속가능성
- 정부, 시민사회, 노동조합, 언론매체, 지역사회 등

### 3. 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실시

#### 가. 인권영향평가 개요

○ 평가대상 기간 : 2021. 11. ~ 2022. 10.

○ 평가주체 : (내부) 건축공간연구원 TF, (외부) 이매니지먼트(주)

연구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진단 및 평가 실시

○ 평가범위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기관운영)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환경권, 고객 및 직원 인권 보호 분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지표를 토대로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를 설계하고 기관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

(주요사업) 연구원의 ‘연구사업’ 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의 인권 체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 관리, 사후관리 등의 측면에서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

○ 평가목적

-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임직원, 공급업체, 지역주민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
- 도출된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원의 향후 인권경영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인권경영 발전에 기여

#### 나. 주요사업 선정

○ 평가대상 사업 : 연구사업

○ 주요사업 선정기준

-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어느 한 분야를 특정하기보다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되는 ‘연구사업’ 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2021년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도 동일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전년과의 비교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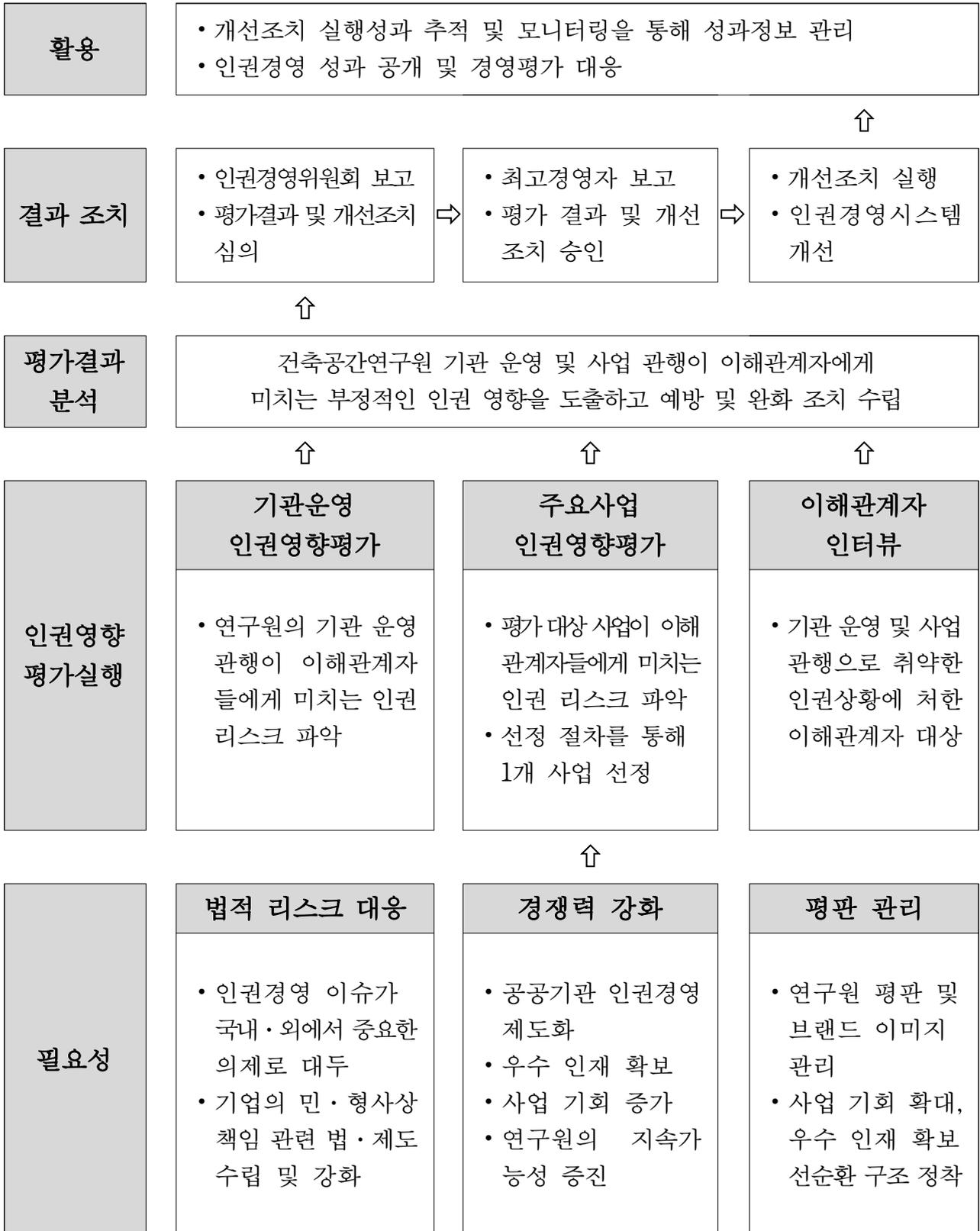
석을 통해 인권경영 이행성과를 파악하고자 함

#### 다. 평가방법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서 제시한 지표와 원칙,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별 객관적 증빙자료와 평가기준을 표준화하였으며, 표준화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제공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음
- 기관운영 평가분야별 업무담당자와 주요사업 담당자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 TF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실행방법 및 협조체계 운영방안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동평가 여건을 조성함
- 체크리스트별로 연구원 TF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충족(예)’ 지표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미충족(보완필요 및 아니오)’ 지표에 대해서는 연구원 TF의 검증을 거쳐 추가 증빙자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문기관에서 평가에 반영함
- 연구원 TF에서 최종적으로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평가를 마무리하고, 전문기관에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결과보고서 초안 내용을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4. 인권영향평가 실행개요

### 가. 인권영향평가 프레임워크



## 나. 인권영향평가 추진 단계

|                                |   |
|--------------------------------|---|
| <p>1단계<br/>준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수행 주체 결정(외부 전문기관+연구원 Task Force)</li> <li>• 인권영향평가 범위 설정(기관운영+주요사업 1개)</li> <li>• 2022년 건축공간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li> <li>• 2022년 건축공간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착수보고</li> </ul>  |
| <p>2단계<br/>사전조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li> <li>• 국내외 기준에 따라 연구원 인권경영체계 구축 현황 검토 및 보완·개선 방향 도출</li> <li>• 평가 대상 사업 선정(연구사업)</li> <li>•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개선·보완(기관운영·주요사업)</li> </ul>  |
| <p>3단계<br/>착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 대상 평가지표 워크숍(인권영향평가 이해, 평가지표 이해 및 작성방법 숙지)</li> <li>• 1차 평가(내부 문서 및 규정, 관행을 근거로 TF가 평가 실시)</li> <li>• 2차 평가(용역팀이 1차 평가 결과를 검증하고 평가 결과 수정)</li> <li>• 용역팀 2차 평가 결과 TF에서 검토하고 피드백 제시</li> <li>• 피드백 반영하여 평가 수정하고 결과보고서 작성</li> <li>• 인권경영위원회에 평가 결과 보고하고 의견 수렴하여 결과보고서 작성</li> </ul> |
| <p>4단계<br/>결과적용 및<br/>활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악된 부정적 인권 영향 예방 및 완화 조치 마련</li> <li>• 파악된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절차 시행</li> <li>• 인권경영시스템 개선 및 보완</li> </ul>   |
| <p>5단계<br/>모니터링 및<br/>성과보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조치 실행 성과 모니터링</li> <li>• 실행 성과 결과 보고</li> <li>• 성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li> </ul>  |

## 5. 평가지표 구성과 내용

### 가. 사전 정보

#### 1) 용어 구별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평가 지표(체크리스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원의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권경영시스템 구성 요소</li> <li>연구원의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존중해야) 하는 인권 목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원의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의 중요 실천 요소</li> <li>연구원의 필수 인권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요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 실천 요소의 실행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li> </ul> |

#### 2) 답변 판단 기준

| 구분                                    | 판단 기준   |
|---------------------------------------|---|
| 예(Y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li> </ul>   |
| 보완 필요<br>(Further attention requir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일부 진전 정도에 대한 진단과 향후 보완 계획 수립 필요)</li> </ul>                     |
| 아니오(N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경우(향후 추진계획 필요)</li> </ul>   |
| 정보 없음<br>(No Inf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의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정보 수집체계 구축 필요)</li> </ul>                                       |
| 해당 없음<br>(Not applicable and Unknow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이 연구원 및 사업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경우 (e.g. 외국인 근로자 처우 - 외국인 근로자 없음. 노조 부재 시 대안 조치 - 노조 있음 등)</li> </ul> |

## 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1) 체크리스트 도출

| 검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가 &lt;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gt;에 제시한 기관운영 체크리스트(10대분야 33개 항목 158개 지표)를 사용하여 2020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기관운영과 관련성이 없는 일부 항목과 지표를 제외하고 ‘직원 인권보호’ 분야를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11개 분야 29개 항목 136개 지표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li> <li>• 2022년에는 2021년도 지표 체계를 사용하되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1개 항목 4개 지표를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11개 분야 30개 항목 138개 지표를 설정하였음</li> </ul> |  |

### 2) 체크리스트 개요

| 연번 | 분야              | 항목                | 지표수 |
|----|-----------------|-------------------|-----|
|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인권존중 정책 선언        | 29  |
|    |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
|    |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
|    |                 | 인권경영 성과           |     |
|    |                 | 구제절차 마련           |     |
| 2  | 고용상의 비차별        | 고용상 비차별           | 14  |
|    |                 | 고용상 남녀 비차별        |     |
|    |                 |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 14  |
|    |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     |
|    |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
| 4  | 강제노동의 금지        | 강제노동의 금지          | 8   |
| 5  | 연소자노동의 금지       | 연소자 고용 금지         | 6   |

|    |                 |                    |     |
|----|-----------------|--------------------|-----|
| 6  | 산업안전<br>보장      | 작업장 안전             | 15  |
|    |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
|    |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     |
|    |                 |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     |
| 7  | 책임 있는<br>공급망 관리 |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10  |
|    |                 | 모니터링 실시            |     |
|    |                 |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
| 8  | 지역주민의<br>인권보호   |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 5   |
|    |                 |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     |
| 9  | 환경권<br>보장       | 환경정보의 공개           | 8   |
|    |                 | 비상계획 수립            |     |
| 10 | 고객<br>인권 보호     | 고객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 12  |
|    |                 | 고객 사생활 보호          |     |
| 11 | 직원<br>인권 보호     | 직장내 괴롭힘 방지         | 17  |
|    |                 | 직장내 성희롱 금지         |     |
|    |                 | 장애인 근로자 보호         |     |
|    |                 | 일·가정 양립            |     |
| 합계 | 11              | 30                 | 138 |

## 다.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1)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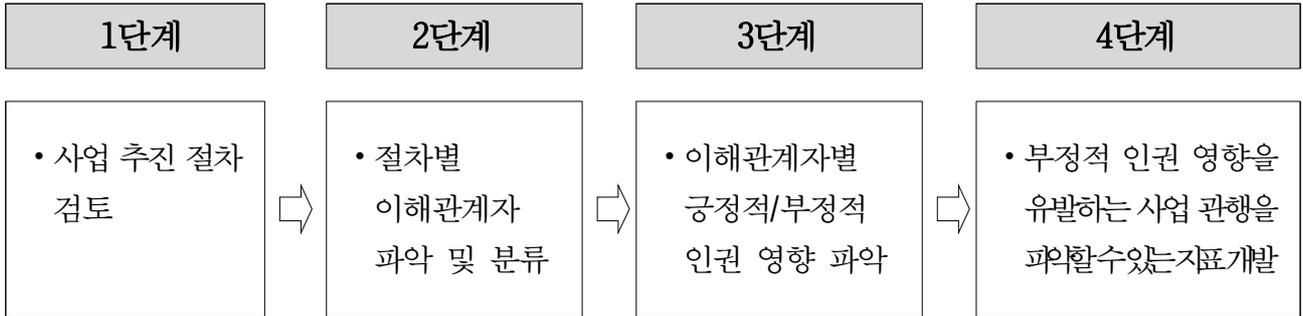
| 구분               | 세부 내용                 |   | 적합도 |
|------------------|-----------------------|---|-----|
| 인권<br>영향의<br>과급성 | 심각성                   | • 부정적 인권영향으로 인한 피해 정도                           | ○   |
|                  | 회복<br>가능성             | • 보상 등 구제를 통한 피해 원상회복 가능성 정도                    | ○   |
|                  | 범위                    | • 피해 발생 시 예상되는 영향력 범위 내 위치한 이해관계자 수 또는 지역적 범위   | ●   |
| 대표성              | 목적<br>사업              | • 연구원 설립 취지 및 미션과의 직접적인 관련 정도<br>• 중점 추진사업      | ●   |
| 지역사회<br>연계성      | 지역<br>현안              | • 지역사회의 현안 또는 이슈와 연계된 사업                        | ●   |
| 독점성              | 승인/허가,<br>인증/자격<br>부여 | •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사업의 승인이나 허가,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 | ●   |

주) 적합도 상(●), 중(○), 하(○)

### 2)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위와 같은 사업 선정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연구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

3) 체크리스트 도출 단계



☞ 위의 체크리스트 개발 단계를 적용하여 4개 사업별로 아래와 같이 체크리스트를 설정

4) 체크리스트 개요

| 연번 | 항목           | 지표수    |
|----|--------------|--------|
| 1  | 사업의 인권체제     | 3개     |
| 2  |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6개     |
| 3  | 수행기관 관리      | 2개     |
| 4  | 사후관리         | 2개     |
| 합계 | 4개 항목        | 13개 지표 |

## II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1. 평가 종합

#### 가. 총평

| 구분       | 세부내용  |
|----------|---|
| 인권경영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공간연구원은 2019년 12월 인권경영을 선포하고 인권경영 헌장 및 이행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12월 헌장 및 이행지침을 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li> <li>• 기관은 인권경영위원회와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으며,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다각적 활동을 전개해 왔음</li> <li>• 기관은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출한 인권경영 성과를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를 통해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음</li> </ul> |
| 개선 필요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은 2019년 자체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이래 2020년~2022년에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li> <li>• 기관은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10조(책임있는 업무계약자 관리)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계약자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등 계약 상대방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
| 평가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138개 지표 중 8개 지표가 ‘해당 없음’ 으로 나타났고, 평가 대상 지표 130개에 대한 충족 정도를 나타내는 응답 분포는 ‘예’ 127개(97.7%), ‘보완 필요’ 3개(2.3%)로 나타났음</li> <li>•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제외한 10개 분야가 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반면,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li> </ul>  |

나. 체크리스트 종합 진단 결과

| No. | 분 야              | 평가결과 |          |         |          |          |
|-----|------------------|------|----------|---------|----------|----------|
|     |                  | 예    | 보완<br>필요 | 아니<br>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1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29   |          |         |          |          |
| 2   | 고용상의 비차별         | 14   |          |         |          |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14   |          |         |          |          |
| 4   | 강제 노동의 금지        | 8    |          |         |          |          |
| 5   | 연소자 노동의 금지       | 5    |          |         |          | 1        |
| 6   | 산업안전 보장          | 15   |          |         |          |          |
| 7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4    | 3        |         |          | 3        |
| 8   |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 3    |          |         |          | 2        |
| 9   | 환경권 보장           | 7    |          |         |          | 1        |
| 10  | 고객 인권 보호         | 12   |          |         |          |          |
| 11  | 직원 인권 보호         | 16   |          |         |          | 1        |
| 합 계 |                  | 127  | 3        |         |          | 8        |

## 2. 기관운영 분야별 평가 결과

### 가. 분야 1\_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 (평가요약)

- 연구원은 인권경영 전담조직 지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경영 이행지침 수립,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등 인권경영 인프라를 갖추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해오고 있음
- 연구원은 2019년 이래 연 1회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이슈를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오고 있음
- 연구원은 인권경영 규범 마련, 조직 운용, 제도 정비, 교육 실시 등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여 인권경영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음
- 연구원은 향후 주기적으로 인권경영 이행성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연구원의 인권경영 노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의 구제절차가 개별적인 문제해결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안의견)

- 연구원의 다양한 인권경영 이행성과들을 반기 단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 No. | 항 목               | 평가결과 |       |     |       |       |
|-----|-------------------|------|-------|-----|-------|-------|
|     |                   | 예    | 보완 필요 | 아니오 | 정보 없음 | 해당 없음 |
| 1   | 인권존중정책 선언         | 6    |       |     |       |       |
| 2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5    |       |     |       |       |
| 3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5    |       |     |       |       |
| 4   | 인권경영 성과           | 7    |       |     |       |       |
| 5   | 구제절차 마련           | 6    |       |     |       |       |
| 합 계 |                   | 29   |       |     |       |       |

□ 분야1. 항목별 결과

1.1) 인권존중 정책선언

|      |   |
|------|---|
| 평가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국제기준을 반영한 인권경영 현장 및 이행지침을 제정하여 대내외에 공표하였으며, 시대 추이에 따른 인권이슈를 반영하여 개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음.</li> <li>- 연구원은 홈페이지 상의 인권경영 메뉴를 세분화하여 현장 및 이행지침, 구제절차 안내, 인권교육 자료,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으로 구성하고 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음</li> </ul>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      |  |
|------|--|
| 평가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2019년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li> <li>- 2020년 이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li> <li>-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및 주요사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적 인권영향 요소를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한 바 있음</li> <li>-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시 협력업체 인권침해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li> </ul>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             |  |
|-------------|--|
| <b>평가의견</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인권경영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인권경영 헌장 제정 공표,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및 개정,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 임직원에게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 시행,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등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여 왔음</li> <li>- 연구원은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회계규정에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계약 절차에서 인권, 노동,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행지침에 업무계약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를 명시하고 있음</li> </ul> |
| <b>권고의견</b> | - 권고의견 없음  |

### 1.4) 인권경영 성과

|             |  |
|-------------|--|
| <b>평가의견</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하여 정성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왔으며 연구원 내 갑질, 왕따, 따돌림,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건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양적인 평가 또한 실시하여 왔음</li> <li>-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li> </ul> |
| <b>제안의견</b> | - 연구원의 다양한 인권경영 이행성과들을 반기 단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1.5) 구제절차 마련

|             |   |
|-------------|---|
| <b>평가의견</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구제절차에의 접근성,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음</li> <li>- 인권침해 사건의 원인이 가해당사자 개인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차원의 문제가 있을 경우(예: 상사의 갑질 등), 구제절차는 가해당사자 개인에 대한 징계 등 개별적인 문제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예: 조직문화 개선 노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li> </ul> |
| <b>권고의견</b> | - 권고의견 없음   |

## 나. 분야 2\_고용상의 비차별

### (평가요약)

- 연구원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음
- 연구원은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음

###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 No. | 항 목          | 평가결과 |          |     |          |          |
|-----|--------------|------|----------|-----|----------|----------|
|     |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1   | 고용상 비차별      | 5    |          |     |          |          |
| 2   | 고용상 남녀 비차별   | 6    |          |     |          |          |
| 3   |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 3    |          |     |          |          |
| 합 계 |              | 14   |          |     |          |          |

□ 분야2. 항목별 결과

2.1) 고용상 비차별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사관리규정, 복지후생규칙, 단체협약 등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2.2) 고용상 남녀비차별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남녀 비차별에 관한 사항을 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사관리규정, 단체협약 등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2.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 다. 분야 3\_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평가요약)

- 연구원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이 없음
- 연구원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연구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일이 없으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 No. | 항 목               | 평가결과 |          |     |          |          |
|-----|-------------------|------|----------|-----|----------|----------|
|     |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1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 4    |          |     |          |          |
| 2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 5    |          |     |          |          |
| 3   |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5    |          |     |          |          |
| 합 계 |                   | 14   |          |     |          |          |

□ 분야3. 항목별 결과

3.1)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      |  |
|------|--|
| 평가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li> <li>- 연구원은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휴식시간 등 다양한 내용을 노동자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음</li> </ul>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방해하는 일이 없으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      |  |
|------|--|
| 평가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단체협상을 위해 노동자 대표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영업비밀이나 기밀유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음</li> <li>-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관 대표와 협상하도록 하고 있음</li> </ul>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 라. 분야 4\_강제노동의 금지

### (평가요약)

- 연구원은 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단체협약 등에 강제노동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 No. | 항 목     | 평가결과 |          |     |          |          |
|-----|---------|------|----------|-----|----------|----------|
|     |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1   | 강제노동 금지 | 8    |          |     |          |          |
| 합 계 |         | 8    |          |     |          |          |

□ 분야4. 항목별 결과

4.1) 강제노동 금지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인권경영 현장 및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강제노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에 근무시간,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일체의 강제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 마. 분야 5\_연소자노동의 금지

### (평가요약)

- 연구원은 인권경영 현장 및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아동노동의 금지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고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 연구원은 연소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

###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 No. | 항 목       | 평가결과 |          |     |          |          |
|-----|-----------|------|----------|-----|----------|----------|
|     |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1   | 연소자 고용 금지 | 5    |          |     |          | 1        |
| 합 계 |           | 5    |          |     |          | 1        |

□ 분야5. 항목별 결과

5.1) 연소자 고용 금지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인권경영 현장 및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아동노동 금지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연소자 고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 바. 분야 6\_산업안전 보장

### (평가요약)

-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이 사무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은 존재하지 않음
- 연구원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음

###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 No. | 항 목               | 평가결과 |          |     |          |          |
|-----|-------------------|------|----------|-----|----------|----------|
|     |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1   | 작업장 안전            | 5    |          |     |          |          |
| 2   |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4    |          |     |          |          |
| 3   |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 3    |          |     |          |          |
| 4   |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 3    |          |     |          |          |
| 합 계 |                   | 15   |          |     |          |          |

□ 분야6. 항목별 결과

6.1) 작업장 안전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근무지의 안전을 위해 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 이행지침, 안전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단체협약,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등에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규정에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1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발간하였음<br>- 연구원은 매년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를 필수 이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6.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며, 여기에는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 등이 포함됨.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 사. 분야 7\_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평가요약)

- 연구원은 협력업체 등 업무계약자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회계규정 및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반영하고 있음
- 향후 협력업체 등 계약상대방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권고의견)

- 향후 협력업체 등 계약상대방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 No. | 항 목                 | 평가결과 |          |     |          |          |
|-----|---------------------|------|----------|-----|----------|----------|
|     |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1   |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3    | 1        |     |          |          |
| 2   | 모니터링 실시             |      | 2        |     |          |          |
| 3   |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1    |          |     |          | 3        |
| 합 계 |                     | 4    | 3        |     |          | 3        |

□ 분야7. 항목별 결과

7.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      |   |
|------|---|
| 평가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회계규정에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계약절차에서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음을 명시(제88조 계약원칙 ③항)하고,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책임있는 업무계약자 관리(제10조), 업무계약자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제21조)을 반영하고 있음</li> <li>- 향후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협력업체 등 업무계약자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
| 권고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업체 등 업무계약자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li> </ul>  |

7.2) 모니터링 실시

|      |  |
|------|--|
| 평가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21조(업무계약자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를 계약 시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존중 책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li> </ul>                                      |
| 권고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21조를 적용하여 계약 시 인권존중 책무 이행에 대한 다짐을 받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계약자의 인권존중 책무에 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예: 계약기간이 길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외부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모니터링 실시)</li> </ul> |

7.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   |
|------|---|
| 평가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민간건물(KT&amp;G 빌딩)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물 보안 등의 업무는 해당사항 없음</li> </ul> |
| 권고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의견 없음</li> </ul>   |

## 아. 분야 8\_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 (평가요약)

- 연구원은 지적재산권관리지침, 업무상 저작물 표준처리지침 등에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수행 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연구윤리확인서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 No. | 항 목            | 평가결과 |          |     |          |          |
|-----|----------------|------|----------|-----|----------|----------|
|     |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1   |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      |          |     |          | 2        |
| 2   |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 3    |          |     |          |          |
| 합 계 |                | 3    |          |     |          | 2        |

□ 분야8. 항목별 결과

8.1)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지역주민의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입하고 보상하는 등의 지역주민 재산권과 관련된 지표와는 해당 사항이 없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8.2) 지역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지적재산권관리지침, 업무상 저작물 표준처리지침 등에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br>- 연구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진 등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연구윤리확인서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 자. 분야 9\_환경권 보장

### (평가요약)

- 연구원은 인권경영 현장 및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노력을 명시하고 있음
- 연구원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사고(환경안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 No. | 항 목      | 평가결과 |          |     |          |          |
|-----|----------|------|----------|-----|----------|----------|
|     |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1   | 환경정보의 공개 | 2    |          |     |          | 1        |
| 2   | 비상계획 수립  | 5    |          |     |          |          |
| 합 계 |          | 7    |          |     |          | 1        |

□ 분야9. 항목별 결과

9.1) 환경정보의 공개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에너지 사용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9.2) 비상계획 수립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안전관리규정에 재난 및 안전교육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재난안전사고 대응매뉴얼 제·개정을 명시하고, 사고(환경안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 차. 분야 10\_고객 인권 보호

### (평가요약)

- 연구원은 연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연구원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고, 연구원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음

###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 No. | 항 목              | 평가결과 |          |     |          |          |
|-----|------------------|------|----------|-----|----------|----------|
|     |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1   | 고객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 6    |          |     |          |          |
| 2   | 고객 사생활 보호        | 6    |          |     |          |          |
| 합 계 |                  | 12   |          |     |          |          |

□ 분야10. 항목별 결과

10.1) 고객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             |  |
|-------------|--|
| <b>평가의견</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인권경영 현장에 개인정보 보호 및 국민과 고객의 정보접근권을 명시하고,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정보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음</li> <li>- 홈페이지에 주요 연구분야 및 발간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소리함 메뉴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음</li> </ul> |
| <b>권고의견</b> | - 권고의견 없음  |

10.2) 고객 사생활 보호

|             |   |
|-------------|---|
| <b>평가의견</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보유 중인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보유근거, 목적, 항목, 기간 등을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운영하고 있음</li> <li>-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 주체에게 수집 동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며, 개인정보 폐기 현황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파일 파기를 공지하고 있음</li> </ul> |
| <b>권고의견</b> | - 권고의견 없음   |

## 카. 분야 11\_직원 인권 보호

### (평가요약)

- 연구원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 직장내 성희롱 금지, 장애인 근로자 보호, 일·가정 양립 등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 No. | 항 목         | 평가결과 |          |     |          |          |
|-----|-------------|------|----------|-----|----------|----------|
|     |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1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5    |          |     |          |          |
| 2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5    |          |     |          |          |
| 3   | 장애인 근로자 보호  | 3    |          |     |          | 1        |
| 4   | 일·가정 양립     | 3    |          |     |          |          |
| 합 계 |             | 16   |          |     |          | 1        |

□ 분야11. 항목별 결과

11.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  |
|------|--|
| 평가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성희롱·성폭력·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제정하고, 전직원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li> <li>- 연구원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li> </ul>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11.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   |
|------|---|
| 평가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을 실시하여 고충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음</li> <li>- 연구원은 직장내 성희롱 금지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신고 채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li> </ul>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 11.3) 장애인근로자 보호

|             |   |
|-------------|---|
| <p>평가의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음</li> <li>- 연구원의 2021년 현재 장애인 고용비율은 3.68%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적합직무 개발 등 장애인 근로자 보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
| <p>권고의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의견 없음</li> </ul>   |

### 11.4) 일·가정 양립

|             |  |
|-------------|--|
| <p>평가의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복무규정, 인사관리규정, 단체협약, 보수규정,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등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li> </ul> |
| <p>권고의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의견 없음</li> </ul>  |

### Ⅲ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대상사업 : 연구사업]

#### 가. 평가 종합

| 구분         | 세부내용  |
|------------|---|
| 인권경영 이행 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장기적 업무관계에 있는 원고 의뢰, 위탁용역, 조사원·일용직 고용 등에서 부정적 인권영향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발굴하고,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권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li> <li>• 연구원은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탁연구사업규칙, 연구업무수행규칙 등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이해상충을 회피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li>• 연구원은 위탁업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정보인권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탁기관에 의한 정보 유출 방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li> <li>• 연구원은 위탁과제 최종보고서의 검수 및 심의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검수 및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li> <li>• 연구원이 위탁용역 입찰시 참여업체로부터 징구하는 ‘제안서 제출업체가 평가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는 서약은 참여업체의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
| 평가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13개 지표 중 ‘예’ 12개(92.3%), ‘보완필요’ 1개(7.7%)로 나타났음</li> </ul>   |

## 나. 주요사업 평가 결과

### (평가요약)

- 연구원은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기관 차원에서 갖추어진 사업의 인권체제를 적용하여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부정적 인권영향 요소를 예방하고 있음
- 연구원은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탁 연구사업규칙, 연구업무수행규칙 등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연구원은 위탁업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정보인권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탁기관에 의한 정보 유출 방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연구원은 위탁과제 최종보고서의 검수 및 심의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검수 및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연구원이 위탁용역 입찰시 참여업체로부터 징구하는 ‘제안서 제출업체가 평가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참여업체의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권고의견)

- 연구원이 위탁용역 입찰시 참여업체로부터 징구하는 ‘제안서 제출업체가 평가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참여업체의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 No. | 항 목          | 평가결과 |          |     |          |          |
|-----|--------------|------|----------|-----|----------|----------|
|     |              | 예    | 보완<br>필요 | 아니오 | 정보<br>없음 | 해당<br>없음 |
| 1   | 사업의 인권체제     | 3    |          |     |          |          |
| 2   |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5    | 1        |     |          |          |
| 3   | 수행기관 관리      | 2    |          |     |          |          |
| 4   | 사후관리         | 2    |          |     |          |          |
| 합 계 |              | 12   | 1        |     |          |          |

## 다. 주요사업 항목별 평가 결과

### 1.1) 사업의 인권체제

|             |   |
|-------------|---|
| <b>평가의견</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연구사업 수행 과정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를 인식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을 최소화기 위해 연구원 차원에서 마련된 인권경영 제도와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li> <li>- 연구사업에 관여하는 임직원은 모두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있음</li> </ul> |
| <b>권고의견</b> | - 권고의견 없음.  |

### 1.2)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   |
|-------------|---|
| <b>평가의견</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연구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안서 평가 등 심사평가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평가위원회에 의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li> <li>- 위탁과제 수행기관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li> <li>- 연구원은 위탁용역 입찰시 제안요청서 안에 ‘제안서 제출업체가 평가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는 서약을 받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참여업체의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
| <b>권고의견</b> | - 위탁용역 입찰 시 제안서 제출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발주기관의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는 서약을 받는 조치가 참여업체의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1.3) 수행기관 관리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연구용역 계약 중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과업을 포함한 위탁계약의 경우 비밀유지 서약서,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등을 징구함으로써 정보인권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 1.4) 사후관리

|      |  |
|------|--|
| 평가의견 | - 연구원은 위탁연구사업규칙에 위탁연구사업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위탁연구사업 평가 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연구사업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권고의견 | - 권고의견 없음  |

## IV 중대성 평가 통한 주요 인권이슈 도출

### 가. 중대성 평가 개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2022.08)’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결과 식별된 여러 인권이슈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대처할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하도록 권고하였음
  -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이슈들을 대상으로 연구원 TF가 1차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용역팀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중대성 평가를 수행함
- 중대성 평가는 해당 인권이슈의 발생 가능성(likelihood)과 영향 심각성(consequence)을 기준으로 실시
  - 발생 가능성 : 연구원 및 타 공공기관에서 과거에 발생한 빈도, 현재나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 등을 수준 1부터 수준 5까지 평가하여 점수 부여
  - 영향 심각성 : 해당 인권이슈가 현실화되었을 때 기관의 사업성과 및 평판에 영향을 주는 정도, 재정손실 수준, 법 위반 여부에 의한 영향 수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준 1부터 수준 5까지 평가하여 점수 부여
- 중대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권이슈별 점수를 산출하고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을 주요 인권이슈로 선정
  - 고위험군 : 발생 가능성 수준과 영향 심각성 수준을 합한 점수가 8점 이상인 인권이슈로 최우선적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중위험군 : 발생 가능성 수준과 영향 심각성 수준을 합한 점수가 5점 이상인 인권이슈로 고위험군에 이어 차순위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보통위험군 : 발생 가능성 수준과 영향 심각성 수준을 합한 점수가 5점 미만인 인권이슈로 상대적으로 후순위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나. 주요 인권이슈 도출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총 4개의 인권이슈를 대상으로 연구원 TF와  
용역팀이 함께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함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4의 인권이슈를 대상으로 중  
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4개의 주요 인권이슈를 선정하였음

| 분야             | 인권 이슈                             | 중대성 평가    |           |    |     | 비고         |
|----------------|-----------------------------------|-----------|-----------|----|-----|------------|
|                |                                   | 발생<br>가능성 | 영향<br>심각성 | 점수 | 분류  |            |
| 책임있는 공급망<br>관리 | 협력기관과 계약시 인권보호<br>존중에 관한 내용 서면 요구 | 3         | 4         | 7  | 중위험 | 주요<br>인권이슈 |
|                | 협력기관 인권보호 준수 여부<br>모니터링           | 2         | 4         | 6  | 중위험 | 주요<br>인권이슈 |
|                | 협력기관 인권침해 발생시<br>대처               | 1         | 5         | 6  | 중위험 | 주요<br>인권이슈 |
| 연구사업           | 수행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br>있는 업체의 이의제기 처리 | 2         | 5         | 7  | 중위험 | 주요<br>인권이슈 |

## V 주요 인권이슈별 대응방안

### 가. 기관운영 개선과제

- 중대성 평가 결과 선정된 3개의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분야             | 주요 인권이슈                                 | 세부 내용   | 대응방안   |
|----------------|---|---|--|
| 책임있는<br>공급망 관리 | 협력기관과<br>계약시 인권보호<br>존중에 관한<br>내용 서면 요구 | -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10조(책임있는 업무계약자 관리)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계약자 인권침해 예방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향후 협력업체 등 업무계약자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지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                | 협력기관<br>인권보호 준수<br>여부 모니터링              | - 업무계약자 등 협력기관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이 필요함(연구원과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과업에 한하여 모니터링 실시)    | -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이고, 과업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방문 점검(체크리스트 활용), 관계자 면담, 전화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 실시 |
|                | 협력기관<br>인권침해 발생시<br>대처                  | - 협력기관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협력기관에서 인권침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를 요청하고, 적절히 조치되지 않았을 경우 관계단절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 나. 주요사업 개선과제

- 중대성 평가 결과 선정된 1개의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분야   | 주요 인권이슈                        | 세부 내용   | 대응방안   |
|------|--------------------------------|---|--|
| 연구사업 | 수행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의 이의제기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의 입찰용역 제안요청서 안에 ‘제안서 제출업체가 발주기관의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는 서약을 받고 있는데, 이는 참여업체의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용역 참여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안에 있는 ‘제안서 제출업체가 발주기관의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는 서약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음</li> <li>- 연구원 위탁용역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의제기에 보다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li> </ul> |